

#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444.1 827 (전화번호 75-6367)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관	시 장		
시행일자	77. 11. 11		
보존년한	보존		
보조기관	제2부시장	협	법무국장 (고시안있음)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		건축국장
	행정국장	결재 1973123 시장실	건축국장
기안책임자	내경발 77. 11. 11		건축국장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통계 1973123 시정
계목	권한 위임 사항 고시		
"제1안"			
내부결재			
1. 건축법 및 도시계획의 개정에 따라 동결			
제5조에 정한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각은안과			
같이 고시코저 하오니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2안" . . . . .			

고시안심사	1973. 11. 24	제 178호
심사자	법제	사무장

#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건축법상 권한 위임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  
의하여 다음에 기재한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2 조 제 15 호 나 목 . 제 5 조 .  
제 6 조 제 3 항 . 제 7 조 . 제 7 조의 2 . 제 7 조의 3 제 2 항 .  
제 8 조 . 제 9 조의 2 제 2 항 . 제 42 조 제 1 항 1 호 . 제 43 조 별 동 조  
제 4 항 . 제 43 조와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의 권한의 전부.

(각방 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  
5층이상의 건축물과 벽화지구내의 특정 가구 정비 지구의  
건축물이 관할 권한을 ~~구청장에게~~ ~~가르~~ 한다. 제외한다)

1973. 11.

## 서울 특별 시장

제 3 안

구청장 권한 위임 시장  
제 목 관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 하오리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 게재 기명. ; . 권한 위임 사항.

나. 광보 제재 구분 ; 고 시

가. 법규 근거 ; 건국법 제 42 조 및 증시행령 제 5 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매

"제 4 안.

주식 공보실장 박성 과장

제목 사보 제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사보 제재를 의뢰 하오리  
제재 하여 주시게 바랍니다

가. 광보 제재 건명

"제 2 안 가. 나. 가항 이기 시행함."

첨부 고시문 사본 2매

"제 5 안.

주식 주식처참로 박성 시장

제목 권후 업무 권한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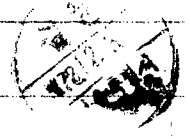
1. 건국법 제 42 조 및 증시행령 제 5 조 이 의거  
다음 사항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을 고시  
하오리 증보하리 업무처리에 착수 있도록 할 것

가. 권한의 위임 내용

"제 2 안 (2매안) 가항 이기 시행함 끝

주식처

사본 1-11 사본 1-4



# 관제법 구분 받체

## 1. 건후법 제 4조 (직접의 위임)

- 1) 건설부 장관은 이법의 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수 있다 (1970. 1. 1 부호개정)
- 2) 서울특별시,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의 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1972. 12. 30 호항개정)

## 2. 건후법 시행령 제 5조 (직접의 위임)

- 1)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제 4조 2항의 제정에 의하여 법규 제2조 제15호 내 목, 제5조, 제6조 3항,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2항, 제8조, 제9조의 2 제2항, 제42조 제1항 1호, 제43조 및 동조 제4항, 제43조와 제47조 2항의 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후물, 5층이상의 건후물과 미관지구 내 및 특정 거주정비지구의 건후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그 처한 의 정부로는 임무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코사 하여야 한다,